

제 442 호

1974. 4. 1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배 석  
편집 : 문화정보실차 김 진 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중앙발간실  
전화 75-6090

# 시 보

차 례

## ◎ 조 례

제 831 호 : 서울특별시구, 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3
제 832 호 : 서울특별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법위에 관한 조례 .....	3
제 833 호 : 서울특별시립새마을사회복지관설치조례제정조례 .....	4
제 834 호 :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4
제 835 호 : 서울특별시가축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	4
제 836 호 : 서울특별시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5
제 837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5
제 838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	6
제 839 호 :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7
제 840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	9
제 841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조례 .....	10

## ◎ 구 례

제 1351호 : 서울특별시공무원리사무소제정중개정규칙 .....	11
제 1352호 : 서울특별시동적제정중개정규칙 .....	13
제 1353호 : 서울특별시수질지사무소제정중개정규칙 .....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1353 호 : 서울특별시람가축시장직제중개정규칙 .....	13
제 1354 호 : 서울특별시람보건의제중개정규칙 .....	14
제 1355 호 : 서울특별시람아동상담소직제중개정규칙 .....	14
제 1356 호 : 서울특별시람표지관리사무소직제 .....	15
제 1357 호 : 서울특별시람병원직제중개정규칙 .....	15
제 1358 호 : 서울특별시람수도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	16
제 1359 호 : 서울특별시람근로자회관직제중개정규칙 .....	18
제 1360 호 : 서울특별시람부녀복지관직제중개정규칙 .....	18
제 1361 호 : 서울특별시람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	18
◎ 고 시 .....	
제 41 호 : 도시계획시설(광장)지적승인 .....	21
제 42 호 : 도시계획사업(지하차도)실시계획변경인가 .....	21
◎ 공 고 .....	
제 68 호 : 서울특별시람장적인경신공고 .....	25
◎ 사 령 .....	
	25

**조** **례**

1974. 4. 15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출장소 설치 조례 등 개정 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32 호

서울특별시  
1974. 4. 15.

서울특별시 행정직과감공무원  
의 임위의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 831 호

서울특별시, 출장소 설치 조례 등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출장소 설치 조례 등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  
원법 제 2 조 제 2 항 제 2 조의 규  
정의 하의 임명직공무원의 임위  
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정의) 행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출장소의 총무과, 시민과, 석무과,  
청소과 (운행출장소에 한함), 산업과  
건설과 (운행출장소에 한함), 토무과 (운  
행출장소에 한함), 건축과를 두되,  
총무과장, 시민과장, 석무과장, 청소과  
장, 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토무과장은 지방토무기과로,  
건축과장은 지방건축기과로 보한다.

제 3 조 (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지명)  
다음에 열거하는 직을 행정직 지  
방공무원으로 한다.

- 1. 아동상담소의 장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된 서  
서울특별시 행정직 지방공무원의 임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 새마을사회복지관 설치조례 폐지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4. 15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 833 호

서울특별시립새마을사회복지관  
설치조례 제 718 호

(1972.8. 9) 서울특별시립 새마을사회복지관 설

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  
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 834 호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설  
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소장은 3급을류인 일반직지방공  
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어린이대공  
원관리사무소장은 3급갑류인 일반  
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가축시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74. 4.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 835 호

서울특별시가축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가축시장 설치조례를 다  
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중 "시장"을 가축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 836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설치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 조 제 2 항중 "시장"을 "회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부녀복지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 제 837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설치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설치) 무의구락한 부녀자의  
신원보호와 영세근로여성들의 생활유익  
을 위한 경제적 기반조성과 가정복  
지 및 지역사회의 부녀자 계몽지도등  
부녀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  
시립부녀복지관 (이하 "부녀복지관" 이  
라 한다)을 둔다.

제 2 조 제 1 호중 "근우회관"을 "성  
동부녀복지관"으로, 하고 동조 제  
2 호중 "양지회관"을 "동대문부  
녀복지관"으로 한다.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중 "시장"을  
"복지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74. 4. 1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조. 제 838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다  
항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 명칭 및 위치 ) ① 구 수도사업소, 수  
도관리사업소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수원지 사무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② 보조수원지사무소와 배수지사무소  
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업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  
하여 이를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조령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수도사업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1. 수도사업소, 수도관리사업소 명칭 및 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	관 할 구 역
종로구 수도사업소	종 로 구 일 원
중구수도 사업소	중 구 일 원
동대문구 수도사업소	동 대 문 구 일 원
성동구 수도사업소	성 동 구 일 원
성북구 수도사업소	성 북 구 일 원
도봉구 수도사업소	도 봉 구 일 원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서 대 문 구 일 원
마포구 수도사업소	마 포 구 일 원
용산구 수도사업소	용 산 구 일 원
영등포구 수도사업소	영 등 포 구 일 원
관악구 수도사업소	관 악 구 일 원
수도관리 사업소	시 내 일 원

2. 수원지 사무소 명칭

북도수원지사무소, 노량진수원지사무소, 구의수원지사무소, 노량동수원지사무소  
영등포수원지사무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839 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 4 조 및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개발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 3 조 (회계구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주택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따로 운영한다.

제 4 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 2 장 국민주택사업

제 5 조 (세입) 이 회계(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 부터 상환받는 할부금 및 입주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 수익금과 내각대금등으로 충당한다.

제 6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3. 국민주택 단지내의 부대 및 복리시설 건설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다른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6. 국민주택의 재산관리 및 사무관리
7.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제 3 장 주택개발사업

제 7 조 (세입) 이 회계 (주택개발사업) 의 세입은 정부의 보조금 및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일반회계 건입금, 주택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부터의 수입금 및 소관재산의 사용수익금과 매각 대금등으로 충당한다.

제 8 조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택개발 지구내의 택지조성 및 공공시설 건설
2.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을 위한 추방
3.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
4.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
5. 소관재산의 관리 및 사무관리
6. 기타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 4 장 보 칙

제 9 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연체없이 주택은행에 상환한다.

제 10 조 (할부금의 수납) ①입주자로 부터의 할부금 수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②전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는 이차제한법 제 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액을 가산 징수한다.

제 11 조 (용자금의 일시상환) ①국민 주택사업의 경우 입주자는 상환기일 종료전에 용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환액은 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2 조 (관리사무비) ①국민주택사업의 경우 부대 및 부리시설의 관리와 사무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비로서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1. 아파트 : 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

2. 단독주택: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

3. 연립주택:가구당 월 할부금의 3%이내

②건항의 규정에 외거 징수한 관리사무비는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3조(재해보험료) ①국민주택사업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건항이외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주택은행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준비금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건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제 117호(57.2.1) 서울특별시주택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

④ 서울특별시조례제 840호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택지개발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건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 4조(준용) 이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부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조례제 841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설치규칙

제 1 조 (목적) 서울특별시지하철의  
건설과 동 운수사업의 경영을 위  
하여 서울특별시에 서울특별시지하  
철본부(이하 "지하철본부"라 한  
다)를 둔다.

제 2 조 (위치) 지하철본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공포한다.

제 3 조 (본부장) ① 지하철본부에 본부  
장 1인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시  
감,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공업  
감으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  
하철의 운영과 지하철본부의 사무  
를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조직) ① 본부장을 보좌하기

하기 위하여 본부장 밑에 운영담당  
관과 기술담당관 각 1인을 두되  
운영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기술담  
당관은 지방공업부기감 또는 지방  
시설부기감으로 보한다.

② 운영담당관 밑에 관리과, 경리과 및  
운수과를 두며 기술담당관 밑에 공  
무과, 건설과, 건축과와 전기과를  
둔다.

③ 관리과장, 경리과장 및 운수과장  
은 지방서기관으로 공무과장은 지  
방건축기정 또는 지방토목기정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토목기정으로, 건축  
과장은 지방건축기정, 또는 지방건  
기기정으로, 전기과장은 지방전기  
기정으로 보한다.

④ 파외분장사무 기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조 (공무원의 정원) 지하철본부  
에 두는 공무원과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직무대리) ① 본부장이 직무를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부장과 운영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술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현업기관) ① 지하철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역과 사무소 기타 필요한 현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현업기관의 명칭, 위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조례제 609 호 ( 70.3.17 )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0 호

서울특별시 공원관리 사무소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공원관리사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부악공원관리사무소장과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림기과로 보한다.

제 4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기술담당관) ①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에 기술담당관 1 인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농림기과로 보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사무소내의 기술사무에 대하여 종합조정하고 소장을 보좌한다.

제 6 조 내지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의 하부기구) ① 사무소에 서무계, 운영계: 관리 1 계 및 관리 2 계를 두고 서무계장과 운영계장은 지방경찰주사로, 관리

1계장은 지방농림기사로, 관리 2계장은 지방수의사로 보한다.

②사무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 나. 인사, 예산, 회계 및 용도
- 다. 물품장비의 관리
- 라. 매표, 수묘
- 마. 공원내 출입의 통제와 경비
- 바. 공원내 청소와 미화
- 사.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계

- 가. 공원운영의 종합계획
- 나. 공원내시설의 운영 및 운영의 통제
- 다. 공원내 질서의 유지
- 라. 공원이용자에 대한 안내, 공보와 편의 제공
- 마. 공원내 출입자의 보호, 간호 및 미아의 수용보호

3. 관리 1계

- 가. 공원개발의 종합계획
- 나. 공원시설의 설계, 시공감독과 유지관리
- 다. 수목 및 잔디의 식재와유지보호
- 라. 기계, 전기설비의 사설 및 유지보수
- 마. 식물원, 묘포장의 관리

4. 관리 2계

- 가. 동물원의 운영
- 나. 동물원의 사육보호
- 다. 동물방역
- 라. 동물방사원의 관리
- 마. 기타 공원내 동물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대행) 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는 기술담당관이, 남산 및 북악공원관리사무소는 관리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4월 15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1 호

서울특별시동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동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중 "동에 별정직공무원"을 "동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2 호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  
직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원지사무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중 "사무소"를 "보조수원지사무소"로 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보조수원지사무소

1. 서울특별시 미아리 보조수원지 사무소
2. 서울특별시 불광동 보조수원지 사무소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당가축시장 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3 호

서울특별시당가축시장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당가축시장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가축시장에 장장을 두되 장장은 지방별정주사로 보한다.

제 3 조 중 "시장" 을 "가축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 보전소직계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㉑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4 호

서울특별시립보전소직계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보전소직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영등포구보전소 관악지소" 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계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장

㉒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55 호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계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직계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소장등) ① 아동상담소에 소장

및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② 소장은 사회사업전문가인 3급을류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지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상담소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중 "부소장" 을 "수석 아동복지지도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조직을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6 호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조직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이하 "묘지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조직과 관장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직무 ) ① 묘지관리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묘지제도 개선
- 2. 묘지 운영 및 관리
- 3. 묘지사무에 대한 종합조정
- 4. 각 묘지관리사무소지소의 지휘감독

② 지소는 관할지역 묘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 조 ( 소장 ) ①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4 조 ( 공무원 ) 소장이외에 두는 공무원과 각 묘지관리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7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병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4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진료 각과(과)의 과장은 전문의 일시적으로 보할 수 있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 서무과 ) ① 서무과에 서무계와 원무계를 두고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 서무과의 계별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무계

- 가. 기밀인사에 관한 사항
- 나. 문서 관인판수에 관한 사항
- 다.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라. 수수료 사용료 및 진료비수납
- 마. 청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원내 타과(課)·과(科)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원무계

- 가. 환자의 입·퇴원 및 외래환자에 대한 업무
- 나. 진찰권 및 진단서발급
- 다. 수수료 사용료 및 진료비조정
- 라. 환자의 급양 및 영양에 관한 사항
- 마. 영아수용·결연 및 건원에 관한 사항(아동병원에 한함)
- 바. 시체실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58 호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삭제한다.

제 5 조제 1항중 단서와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로구·중구·마포구 및 용산구수도사업소에는 공무제 1 계와 공무제 2 계를 두지 아니하고 공무제만을 둔다.

② 관리계장·과정제 1 계장 및 과정제 2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공무제장·공무제 1 계장 및 공무제 2 계장은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③ 수도사업소의 계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과정제 1 계 과정제 2 계의 분장사무와 공무제 1 계 공무제 2 계의 분장사무는 동일하되 지구별로 분장한다.

1. 관 리 계

- 가. 문서관인 및 기밀
- 나. 교육 및 훈련
- 다. 청중 단속 당직
- 라. 인사부무 급여 및 후생
- 마. 회계 및 용도
- 바. 도서 및 비품보관
- 사. 세입금의 수납정리 및 잡수입처리
- 야. 세입통계 (종합분)
- 자. 납과조서의 수불 및 보관



<p>차. 급수조배 위반자처분</p> <p>카. 남부월중 발급</p> <p>타. 차량 유지관리</p> <p>파. 상수도 시공업자의 지도감독</p> <p>하. 소내업무 전반에 걸친 조사업무</p> <p>거. 타계 주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2. 과정제 (과정제 1제, 과정제 2제)</p> <p>가. 급수사용료의 과정계획 및 통제</p> <p>나. 수도권관리</p> <p>다. 급수사용량 점검</p> <p>라. 계사용료 수수료 및 잡수입 과정</p> <p>마. 양수기사용료 및 동 배자대 과정</p> <p>바. 급수조배위반자 처말보고</p> <p>사. 급수중지 폐전 및 동해제</p> <p>아. 공설공용 수전관리</p> <p>자. 가산금 과정</p> <p>차. 과정통제 (통괄통제는 과정제 1제)</p> <p>카. 급수사용료 제납자에 대한 징수처분 및 재산압류</p> <p>타. 수납소인 및 수납부관리</p> <p>파. 공과금 고부청구</p> <p>하. 파오납금 증당금 환불</p> <p>거. 급수사용료판지, 민원 및 이의 신청처리</p> <p>3. 공무제 (공무제 1제, 공무제 2제)</p>	<p>가. 배급수관 및 그 부속설비 유지관리</p> <p>나. 소배수저렴프장 유지관리</p> <p>다. 급수탑 및 소화전 방화저수조 유지관리</p> <p>라. 급수장치의 신설개량 및 철거공사</p> <p>마. 배수계 급수권화장 및 통합개량공사</p> <p>바. 양수기에 관한 사항</p> <p>사. 배수지관 및 급수장치의 누수방지와 수선공사 (부속설비 포함)</p> <p>아. 계수변조절 및 특별급수</p> <p>자. 수압조사 급수실태조사 및 누수방지</p> <p>차. 특별가압시설의 운영</p> <p>카. 급수내 관한 민원처리</p> <p>타. 급수 및 각종공사의 통제 (통괄통제는 공무제 1제)</p> <p>파. 부검급수공사단속 및 발생방지</p> <p>제 7 조 제 2 항 중 *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자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계경주사* 를 서무계장 및 자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로 한다</p> <p>별표를 삭제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197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규칙제 1359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근로자회관 직제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시장"을 "회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직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규칙제 136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복지관직제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장은 복지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구청장의 명을 받아 관운영  
에 관한 제반사무를 장리하며 소  
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수용부  
녀를 지도 보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 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4. 4. 15.

◎ 서울특별시규칙제 1361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직제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조직) 사업소에 서무과, 과  
징과, 생산과와 공무과를 두고 서  
무과장과 과징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으로, 생산과장은 지방화공기화로,  
공무과장은 지방토목기화 또는 지  
방화공기화로 보한다.

제 4 조를 제 8 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공장장) ①가 가스제조공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장장을 둔다. 남부공장의 공장장은 생산계장이 겸임하고, 용산 및 여의도공장의 공장장은 소속공무원 중 지방행정주사로 소장이 임명한다.

②용산 및 여의도공장과 공장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당해 공장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공장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운영 (과징사무 및 안전관리업무를 포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5 조를 제 9 조로 하며, 제 6 조를 제 10 조로 하고, 동조중 "관리계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 4 조 내지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 (사무과) ①사무과에 사무과와 관리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사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계

가. 사업소 전반행정의 통합조정  
나. 인사부부, 급여 및 후생  
다. 문서편인 및 거발  
라. 기획 예산회계 및 자재의 구입

마. 소내 타파·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관리계

가. 가스사업의 확정 공급계획  
나. 가스사업의 개선과 원가계산  
다. 가스 수요조사와 소요량  
    원단

라.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  
마. 각종 자재 및 비품의 출납  
바. 가스공급조례 위반처리

제 5 조 (과징과) ①과징과에 과징계 1계와 과징 2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②과징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 1계

가. 가스전 관리  
나. 가스사용량점검 및 조정정수  
다. 잠수입 과징

라. 가스공급조례위반자 적발보고  
마. 각종 수수료 및 가산금의  
과징

- 바. 영수조서의 수불 (총괄)
- 사. 파오납의 정리
- 아. 세입통계 (총괄)
- 자. 수납부의 관리 및 수납소인
- 차. 가스사용자의 명의를변경 및 이의신청처리
- 카. 과내 타계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과정 2계

- 가. 가스공급증지해제 및 폐전 처리
- 나. 과년도 체납분 징수
- 다. 체납처분

제 6 조 (생산과) ①생산과에 생산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②생산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계

- 가. 가스생산 종합계획
- 나. 유가스생산 조업 및 공급
- 다. 유가스 프렐트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라. 가스공장의 건설
- 마. 가스발생시설의 연구개발
- 바. 생산가스의 열량분석 및 원료분석
- 사. 용산 및 여의도공장 지도감독

- 아. 액화석유가스의 생산조업 및 공급
- 자. 액화석유가스 발생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차. 가스미터의 성능검사 및 수리
- 카.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7 조 (공무과) ①공무과에 공무 1계와 공무 2계를 두고, 제장은 지방토목기사 또는 지방화공기사로 보한다.

②공무과의 제별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 1계

- 가. 가스배관시설의 안전관리
- 나. 가정관 안전관리의 지도제몽
- 다. 가사연소장치 (기구)의 연구개발
- 라. 가스배관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와 설비개량
- 마. 가스배관망도 유지관리
- 바. 가스미터의 교체
- 사. 가스배관지역의 민원 및 사고처리
- 아. 과내 타계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무 2계

- 가. 가스배관계획의 조사측량
- 나. 가스배관의 설계 시공감독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1 호

도시계획시설(공장)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공장)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조치(공장)

이를 고시한다.

-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부와 상동구,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해 한다.

1974. 4. 16.

서울특별시장

구분	번호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41	잠실공장	성동구신천동	32,000	장면7로 방로1-29교각
"	42	석촌공장	성동구석촌동	74,500	방로2-19호 방로1-29교점

별첨 도면포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출장소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

도시계획사업(기하차도)실시계획변경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381 호(67.9.24)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기하차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실시계획기간을 변경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제 25조와 동법제 26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 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한강건설사업소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하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4. 16.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의위치 : 영등포구영등포동 1가 지내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영등포입체교차로 (철도횡단저하차도) 시설공사
- 3. 면적또는규모 : 폭 14 미터  
연장 246 미터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1) 변경전 : 1973.12.10 - 1973.12.31.

2) 변경후 : 1973.12.10 - 1974. 6.30.

(기간연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및 건물주소,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관계인의주소  
성명 (별첨참조)

인 가 증

- 1. 사업시행지 의위치 : 영등포구영등포동 1가 지내
  - 2. 사업의종류및명칭 : 영등포입체교차로 (철도횡단저하차도) 시설공사
  -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 4. 인가번호 : 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
  - 5. 사업기간의 변경 : 변경전 : 73.12.10 - 73.12.31  
                          변경후 : 73.12.10 - 74. 6.30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관계인의 명세 : 별첨
- 위와같이 아래조건을 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10 조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 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설제도에 의한 도시계획사업할 시계획기간을 변경 인가함.

1974. 4. 16.

서울특별시장

인 가 조 건

- 1. 사업실시완료후 지체없이 사업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심사를 받아야 한다.
  - 2. 별첨 계약설제도 (평면도) 에 의하여 시공설제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별첨 도면은 한강건설사업소에 보관함.

토 지 조 서										
순 위	소재지	분합전표시			분합후표시 (수용대상)			소 용 자		관계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영동포가	94-2	대	1,311.7	94-3	대	80.8	영동포동2가18	김경순	외 30인
2	"	51-1	"	10.5	51-3	"	5.6	" 53	박봉준	
3	"	61-2	"	10.5	51-4	"	6.9	" 53	이영호	
4	"	62	"	12.1	62-2	"	8.2	" 63	함덕근	
5	"	63	"	194.2	63-2	"	28.4	" 85	김광식	외 8인
6	"	96	"	135	96-2	"	22.8	신길동 182	최형운	외 7인
7	"	109	"	59.3	109-2	"	21.6	북산동 3	이복규	외 2인
8	"	105	"	97.5	105-2	"	31.7	영동포 1가 93	조성규	외 5인
9	"	104	"	31.9	104-2	"	17.2	" 104 123	최명신 이천만	
10	"	103	"	35.8	103-2	"	15.8	문배동 30-10	동양제과	
11	"	120-1	"	20.3	120-1	"	20.3	남대산 1가 14	조흥은행	
12	"	120-2	"	100	120-4	"	8.3	"	"	
13	"	121	"	724	121-2	"	26.9	"	"	

물 건 조 서									
순 위	소재지	지번	구 조	용 병 수	수용 면적	소 용 자		성 명	관계인
						주 소	성 명		
1	영동포동가	94-3	(육옥조)본 크립트연화조	(1) 51.78	15	당산동 4가 1의 2	김성순		
				(2) 51.12	15				
2	"	"	원 와 조 평 유 제	(1) 7.56	9	영동포동 1가 94	최봉운		
				(2) 9.56	9				
3	"	"	복조와 좁	(1) 14.4	10	"	김승분		
				(2) 14.4	10				
4	"	"	"	(1) 8.5	10.3	" 94-2	이옥환		
				(2) 7.5	10.3				
5	"	"	"	(1) 3.5	9.3	" 94-3	이화영		
				(2) 3.5	9.3				

순 위	노 제 기	가 선	구 조	총 평 수	수 용 면 적	주 주		자 성 명
						주	소	
7	(공 지)							
7	영등포동1가	94-3	육조와음	(1) 19.2 (2) 19.2	14 14	영등포동1가	94-3	이영근
8	"	61-3	육조와음	(1) 10.5		"	94-2	박봉춘
9	"	61-4	"	(1) 10.5		"		이영호
10	"	62-2	"	(1) 10.4	10.7	"	63-3	함덕근
11	"			(2) 10.4	10.7	"		
12	"	63-2	"	(1) 8 (2) 8	8.7 8.7	"	63-2	김은분
13	"	63-2	"	(1) 8 (2) 8	8.7 8.7	"		김광식
14	"	63-2	"	(1) 8 (2) 8	8.7 8.7	"		김치남
15	"	121-2	철근콘크리트조	(1) 59 (2) 59	20 20	남대문로1가	14	조용은형
16	"	120-1	육조스프레코	(1) 13	19	"		
17	"	120-4	연외조와음	(1) 25 (2) 25	8.0 8.0	"		
18	"	103-4	육조와음	(1) 15 (2) 15	15.8 15.8	도림동	49-14	유용선
20	"	104-2	연외조와음	(1) 19.44 (2) 11.78	18 18	영등포동1가	104-2	최영신 최영빈
22	"	105-2	육조와음	(1) 23 (2) 8	11.98 7.98	"	105-2	최명길
27	"	105-2	"	(1) 19	22.8	"		한삼복
28	"	109-2	"	(1) 11	22.8	"	109-2	
30	(공 지)							
31	"	109-2	"	(1) 3 (2) 3	5.9 5.9	"	109-1	백건비 최신탐
32	"	96-2	"	(1) 9 (2) 9	5.4 5.4	"	96	이봉금
33	"	96-2	"	(1) 9 (2) 9	5.4 5.4	"		이봉영
34	"	96-2	"	(1) 23 (2) 17	9 9	영등포동	육삼동 482-3	서준화

※ 밑에 : (1) ... 1층 (2) ... 2층



**공 고**

경신하였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9 조에 의하여 이에 공고함.

◎ 서울특별시공고제 68 호

1974. 4. 15.

서울특별시장직인경신공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의 직인을 판인규정

1. 경신사용일자: 1974. 4. 17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 직인의 인경:

서울특별시장의 직인

박 기 직 인	경 신 직 인
	

**사 명**

김수진

◎ 1974. 4. 15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과 (공무제장) 황병주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공무과장 직무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대리를 명함.

이병국

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기사(생산중근 산제장직무대리) 안종근

지방보건의연구소보시보에 임함.

도시가스사업소 생산과장 직무

1호봉을 급함.

대리를 명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p>지방전기기사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p>	<p>유대근 산업시찰에 따른 장소준비 및 안내 ( 74.4.15-74.5.26 ) 새 정 과 지적기사 홍기태 영동출장소 지적기사보 장형섭</p>
<p>지방전기기사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p>	<p>백구현 국가공무원법제 73조의 2 제 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영동포구 지방행정 박항자 시민봉사실 서기보</p>
<p>지방전기기사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이근영 노동청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행정서기 한선환 공무원교육원 부산시 전출을 명함.</p>
<p>지방전기기사보시보에 입학. 1호봉을 급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김창근 © 1974. 4. 16 종로구 지방행정 박구원 서기보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박정서기보</p>
<p>중 구 지방행정기 양석주 동대문구 지방행정기 김진백 종로구 지방행정기 김정길 성동구 지방행정기 이재규</p>	<p>시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행정기 하홍산 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기 이영철 서기보</p>
<p>운수 3 과 검사원 정봉상 보건행정과 식음위생 안일웅 감시원 행정과파견 근무를 명함.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p>	<p>시시설관리과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남서기관 이충권 교수부 도봉구수도사업소 신실준비담당관 근무를 명함.</p>

출 무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이 청 송	도 가스사업소 시 지방행정 기 이 공 북
관악구수도사업소 신설준비담당관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이상계획위원회 안전담당관 지방서기관 이 광 하	도 가스사업소 시 지방행정 기 최 용 갈
산업구 연로과장직무대리에 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심 북 구 지방서기관 김 영 수	도 가스사업소 시 지방행정 기 전 광 시
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부청장 지방서기관 신 성 호	도 가스사업소 시 지방행정 기 김 용 선
수도구연로과장 직무대리에 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운 수 1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원 지 연	마 포 구 지방행정 기 인 실 수
이상계획위원회 안전담당관 직무 대리에 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사 무 관 배 상 승	마 포 구 지방행정 기 김 진 귀
성북구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에 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행 정 과 지방행정 사 무 관 이 피 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관악구부청장 직무대리에 입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 기 박 광 진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 사 무 관 최 흥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어린이대공원 관리사무장 직무 대리에 입함.	온결출장소 지방행정 기 송 석 도
수 도 국 서 기관 이 흥 순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경리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마 포 구 지방행정 기 김 순 기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 산 구 지방행정 기 김 용 하
	성북구 근무를 명함.

© 1974. 4. 17

○ 1974. 4. 20

경기도양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관리를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우정출장소) 근무를

명함.  
 강원도영양군 지방행정  
 서울특별시 관리를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관